

대구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가단1042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4.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원고에 대하여 2017. 4. 29. 당시까지 26,622,910원(본세액 기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2. 4.까지 27,383,370원(가산세 포함 40,547,100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C의 형으로, 2016. 7. 10. 부친인 D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E과 자녀들인 F, G, C(상속지분 2/11), 피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7. 4. 29.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따라 2017.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는 2017. 4. 29.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제척기간 경과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과세기관인 원고가 2017. 5. 19.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체납자의 체납처분 조사 중 2020. 12. 중순 이 사건 등기 경료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2017. 5.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과 원상회복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의 관계, 상속재산분할협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지민

부동산 목록

1. 대구 동구 H 전 112㎡

2. 대구 동구 I 답 1197㎡

중 각 2/11 지분. 끝.

